제17장

환경

제17.1조

일반 규정

-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목적이 그들의 무역 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2.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이라는 목적과 자국의 국가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상호지지적 무역과 환경정책을 추구하고 자국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증진한다.
- 3. 양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 및 천연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그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존을 증진하는 데 무역과 무역 정책의 역할을 강화한다.
- 4. 양 당사국은 양국의 역량, 특히 기술적 및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이 장의 양 당사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충만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 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7.2조

목적

- 이 장은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 및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무역 관계의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

나. 이 장의 이행과 상호 관심 있는 환경 문제의 개발에서 무역과 환경 정책 및 관행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17.3조

보호 수준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 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 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 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7.4조

다자간 환경협정

-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 2. 양 당사국은 그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각국의 법과 관행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당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통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환경법 및 규정을 포함한 자국의 환경법 및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 3.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의무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사, 통제 및 국내 환경법 및 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합리적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17.6조

절차적 보장

-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환경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적절히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그 밖의 관련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의 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7.7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 및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

가 행위자와의 적절하며 적시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준비, 조정 및 적용하기로 합의 한다.

제17.8조 환경에 유익한 무역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환경 보호와 보존에 중점을 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9조

생물 다양성

-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생물 다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자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당사국이 사전에 통지한 합의에 따름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7.10조

기후변화

1. 양 당사국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제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는 국제적 약속의 맥락에서 모든 국 가들의 가능한 가장 폭넓은 협력과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요 구하는 공동의 국제적 관심사안임을 인정한다.

- 2.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긴급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과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에서 무역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 3. 양 당사국은 저탄소ㆍ기후탄력적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이라는 세계적인 목적을 고려하며,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청정에너지 생산과 이용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ㆍ적응 프로그램ㆍ프로젝트를 위한 최적 가용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접근, 보 급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무역과 투자 조치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7.11조

환경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개시하고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제17.12조

제도적 장치

- 1. 양 당사국은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 가.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 나. 합의된 협력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 다.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한다.
- 라. 이 장의 이행 및 결과를 검토한다
- 마. 정보교환을 통한 협의를 촉진한다.
- 바.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그리고
- 사. 공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을 고려한다.
- 3. 위원회는 제17.11조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공동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4. 위원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그 밖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고, 가능한 신규 협력 분야도 발굴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임무상의 그 밖의 조치도 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업무는 이 장에 따른 약속 및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대화·효과적인 협력에 기초한다.
- 6. 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17.13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 내에서 환경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접촉선은 제17.11조와 부속서 17-가에 따른 환경에 대한 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17.14조

협의

-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우호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 협의,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그러한 요청서를 전달한 후 60일 내에 양 당사국은 협의를 개시한다.
- 3.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 4. 한쪽 당사국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 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히 소집되고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5.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제공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 협의는 상호합의한 장소에서 열린다.

제17.15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7-가 환경 협력

-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목록을 수립하였으며, 이 목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이 협정의 틀 내의 환경 사안에서 이루어진 조치와 진전에 대한 대화 수행
 -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 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양자,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환경 문제에 관한 협 력
 - 다.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교환
 - 라. 기후변화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마. 생물 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과학적 및 기술적 협력
 - 바. 순환 경제 접근법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측면에 관한 협력
 - 사.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 아. 환경 재난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협력
 - 자. 우수 환경 관행 및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
 - 차. 환경 교육에 관한 협력, 그리고
 - 카.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하기로 합의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 및 활동을 포함한 작업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3. 이 장에 따라 합의된 모든 협력 활동은 이용 가능한 자원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의 환경 우선순위와 필요를 고려한다.